

『태인해안도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관련의견청취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1356
------------	------

2007. 7. 31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7년 7월 25일

나. 제안자 : 광 양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6일

라. 상정내용

- 회 기 :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- 일 자 : 2007년 7월 31일 상정
- 의견제시내용 : 아래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과장 이 노 철)

- 본 사업은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국도2호선에서 도촌마을까지 연결하는 해안일주도로로 원활한 물류수송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,
- 도로개설에 따른 총편입면적 96,734㎡로서 육지부가 57,959㎡, 공유수면인 해수부가 3개소에 38,775㎡(도로편입 24,212㎡, 유희지 14,563㎡)가 편입되어
-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·개발 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위치 : 광양시 태인동 1229번지 지선
- 면적 : 38,775m²(도로편입 24,212m² 유희지 14,563m²)
- 매립목적 : 도로건설 및 녹지시설 설치
- 사업기간 : 2007 ~ 2009
- 시행자 : 광양시

4. 관계법령

-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
【공유수면기본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 첨부】

5. 추진사항

- 1991. 10.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고시
- 2005. 7. 26 : 실시설계용역 완료
- 2006. 5. ~ : 편입토지 및 지장물 50필지중 44필지 보상협의
- 2006. 9. 20 :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
(해면부 공유수면 미 협의된 상태에서 육지부만 인가)
- 2007. 1. :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완료
- 2007. 5. 4 : 미협의 토지(6필지 2,175m²) 수용재결신청
(9월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예정)
⇒ 재결신청사유 : 소유권제한 4필지, 상속인간 협의지연 1필지,
해외 장기출타 1필지)
- 2007. 4. ~ 2007. 8. :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을 위한
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추진
- 2007. 6. 7 :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개최
- 2007. 7. 12 :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개최

6. 금후추진계획

- 2007. 7 : 광양시 의회 의견수렴
- 2007. 8 :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(시→해양수산부)

7. 의견제시 내용

- 태인동을 통과하는 국도2호선은 광양제철소와 연관업체, 광양항컨테이너부두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대형차량의 과적,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교통량 분산 및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해안도로를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
- 매립면적 38,775m²중 도로계획구간 편입부지 24,212m²를 제외한 14,563m²의 유휴지에 대해 녹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염분상승으로 인해 수목의 생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쉼터, 소공원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수립이 요망됨
- 또한,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오·탁수 발생으로 인해 주변지역 수질이 오염 될 수 있으므로 오·탁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필요

8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9. 토론요지

10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)

11. 기타사항 : 없 음

태인해안도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관련 광 양 시 의 회 의 건

- 태인동을 통과하는 국도2호선은 광양제철소와 연관업체, 광양항컨테이너부두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대형차량의 과적,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교통량 분산 및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해안도로를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
- 매립면적 38,775m²중 도로계획구간 편입부지 24,212m²를 제외한 14,563m²의 유희지에 대해 녹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염분상승으로 인해 수목의 생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쉼터, 소공원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수립이 요망됨
- 또한,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오·탁수 발생으로 인해 주변지역 수질이 오염 될 수 있으므로 오·탁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필요